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09.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1. 정태호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0)

상정 ·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2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3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4.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5.12)

상정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9.2)

상정 ·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9.1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합병 방식의 대부분은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

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및 제141조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 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11. 29.자로 직접 회부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상혁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